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 안내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료발전회계 처리방법 관련 예규
-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례
- 2002년 4월분 심사기준 (지침)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병원운영 관계자들은 의료관계 법률과 제도를 적용 하거나 해석하는데 있어 종종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본 란은 병원경영에 있어 궁금한 점이나, 의료제도 ·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대한병원협회지 Q&A로 연락주시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 jyk@kha.or.kr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 안내문

(국세청, 2002.5.13)

내년(2003년) 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다음과 같이 크게 달라지므로, 지금까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던 사업자는 다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장부를 기장하거나 증빙서류를 철저히 받아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종전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표준소득률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text{소득금액} = \text{당해연도 수입금액} \times \text{표준소득률}$$

- 그러나 2002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됩니다.
- 무기장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뒷면에 기재된 수입금액 이상인「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는 내년 5월에 '2002년 발생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부터 다음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text{소득금액} = \text{당해연도 수입금액} - (\text{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비용} \cdot \text{인건비} \cdot \text{임차료 등 주요경비}) - (\text{당해연도 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즉,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10%(복식부기 의무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부를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소득세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기재한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현재소득금액 계산방법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text{소득금액} = \text{당해연도 수입금액} - (\text{당해연도 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도별 / 업종구분	2002년~2003년 귀속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 5,000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0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000만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는「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료발전회계 처리방법 관련 예규

[관련근거: 재정경제부 법인 46012-117(2002.2.27)]

1. 질의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시 시행규칙 제 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취득한 경우
 - 반드시 이미 설정된 고유목적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의료발전준비금을 환입(익금)해야 하는지.
 -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한 후 5년이 되는 때에 의료기기를 취득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병원 건물을 취득하고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한 경우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기간은 동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기간인지 여부

2. 검토내용

- 고유목적사업(영 제56조 제5항)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 의료업은 영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 의료발전회계제도

- 의료비영리법인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고도 의료기기 시설투자등 의료발전에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준비금은 5년 이내 사용해야 함 → 준비금 사용을 용이하게 해 줌)
 - 의료기기 구입비용을 준비금의 사용으로 보도록 하고 그 회계처리에 있어서 기타의 것과 구분하여 의료발전회계로서 경리하도록 함.
 - ※ 의료기기 등의 범위(규칙 제29조의2)
 - ☞ 병원건물(질의2) 및 부속토지
 - ☞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 의료기기(100만원 이상)
 - ☞ 초음파영상기 · 자기공명영상기 · 양전자단층촬영기

■ 의료발전회계에 대한 처리(법인 46012-1045, 2001.11.14)

구 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100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100 구입시	자 산	100 /	현 금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의 료 발 전 준 비 금 100
20 감가상각시	감 가 상 각 비	20 /	감 가 상 각 총 당 금 20
	의 료 발 전 준 비 금	20 /	의 료 발 전 준 비 금 환 입 (익금) 20
50으로 처분시	현 금	50 /	자 산 100
	감 가 상 각 총 당 금	20	의 료 발 전 준 비 금 환 입 (익금) 80
	처 분 손 실	30	
	의 료 발 전 준 비 금	80	

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 (이하 '의료기기'라 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4. 해설

1)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 선택

○ 의료법인의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의료업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로서 의료법인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므로

- 고유목적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의 여부는 당해 의료법인의 선택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영 제56조 제 9항에서도 동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재경부령이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가 필요없고,

- 반대로 구분경리가 없으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의료기기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강제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상계할 필요가 없는 것임.

1-1) 5년째 취득하는 의료기기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가능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후 5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의료발전회계의 규정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규정이므로 5년 이내에 취득하면 동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2) 병원건물의 의료발전준비금도 감가상각기간 동안에 환입하는지? → 가능

○ 병원건물도 규칙 제29조의 2에 규정된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료발전회계에 관한 처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 병원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으로 익금산입해야 함.

☞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은 감가상각을 통한 이중비용계산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감가상각 여부에 따라 의료발전준비금을 환입함.

5. 관련예규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의료기기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 29조의 2에 규정한 의료기기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무상 처리방법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음(법인 46012-1045, 2001.11.14)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행정심판례 (2001 경행심 263, 2001.12.27)

대학병원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처분이 취소됨.

■ 주문

피청구인 2001.9.1 청구인에게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 19,150,270원의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 재단은 경기도 ○○시 ○○구 ○○동에 위치한 연면적 38,249.58m²인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2001.1.9.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105,270원의 부담금을 납부고지하자 이 사건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부과대상 건물 중 각급 학교용 건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2001.10.31. 이 사건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건물은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의 비부과 대상 건물 중 각급 학교용건물(대학병원은 의과대학에 필수적인 학교 연구기관임)에 해당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비부과하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법규를 피청구인의 임의대로 해석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공립병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비부과 대상 건물의 축소)을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통과되더라도 2000년도분을 부과하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성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부과 대상 건물 중 대학병원에 모두 부과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시설은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과 연구시설, 부속시설로 구분되어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

조제1항제7호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학교법인 ○○대학교 부속병원은 부속 시설에 해당하며 의학연구·실습을 통해 의학발전과 지역사회의 보건행정에 기여한 점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종합병원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영리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주 용도가 의료시설로 교육용시설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자는 학교법인 ○○대학교가 아니라 재단법인 ○○재단으로 당해 시설물내 ○○관 건축물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학교법인 ○○대학교에서 유료임차 사용중에 있다.

더욱이 대학 부속병원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시설물이라고 할 경우 국·사립대학 모두 비부과되어야 하나 같은 조 제11호에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에 대해 비부과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도 교통91110-13071(2001.6.29)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질의회신 결과 통보 내용에 있어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는 회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이 사건 시설물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로 결정하여 적법 타당하게 부과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의 교육용시설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설물인 사립대학교의 대학병원이 위 규정에서 말하는 교육용시설물에 해당하는 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판단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대학은 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현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속시설 중 부속병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부속병원을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 의학과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을 위해 갖추어야만 하는 대학의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속병원은 대학의 교육기능과 분리할 수 없는 교육용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사립대학교 부속병원이 영리시설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교육용시설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영리적인 것과 비영리적

인 것의 구분이 매우 모호할 뿐더러 영리적 성격이 있다 하여 교육용시설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로 구분된 교사시설 중 어디까지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용시설물로 볼 것인가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릴 수 밖에 없으므로 영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교육용시설물에서 배제시킨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1호의 국립대학교 대학병원의 제7호의 교육용시설물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학병원은 교육용시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국립대학교 대학병원이 보훈병원 등과 함께 비부과대상임을 명시한 것일 뿐, 그 문구에 없애여 국립대학교 대학병원을 교육용시설물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한 것이 대학 부속병원이 교육용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반대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4월분 심사기준(지침)▶

<적용일 : 2002년 5월 1일 진료분(폐기내용은 즉시적용)>

신설

연 번	제 목	심 사 기 준 (지 침) 내 용
1	부비동염에 STI(Sinus Trans Illuminator)를 이용한 검사	부비동염에 STI(Sinus Trans Illuminator) 장비를 이용한 검사는 철조등(Illuminator)을 이용하여 암실에서 실시하는 철조법과 검사방법 등이 유사하므로 나603 철조법으로 인정한다.
2	Bursectomy의 준용 수기로	Bursectomy는 해부학적 위치와 수술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자90 갱그리온 적출술 소정금액으로 인정한다.

폐기

연 번	제 목	현행심사기준(지침)내용 (2002. 1월분 심사지침)	폐 기 사 유
1	장티푸스상병에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장티푸스환자 중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환자로서 일반환자와 격리하는 경우의 격리실 입원료는 혈액배양검사상 Salmonella typhi가 증명된 경우에 인정한다.	제1군 법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으로서, 환자관리 지침상 발생즉시 격리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1군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인정대상 및 격리기간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사례별로 심사기로 결정되어 지침공개 삭제함 (즉시적용)